

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 실시 안내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연1회 점검을 반드시 실시하시고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해당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 시행 2021.10.21.

구분	내 용
대 상	<input type="checkbox"/>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1. 다음 각 호의 제조소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암반탱크저장소 - 이송취급소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2. 지하탱크저장소 3. 이동탱크저장소 4.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보고서 제출	<input type="checkbox"/> 제출기한: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input type="checkbox"/> 점 검 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이동탱크의 경우는 위험물운송자 <input type="checkbox"/> 제 출 자: 위험물제조소등 설치자 <input type="checkbox"/> 제출서식: 위험물제조소등 일반점검표 / 위험물 정기점검 결과 지적 내역서 <input type="checkbox"/> 제 출 처: 태백소방서 대응총괄과 (☎033-550-8327, Fax:550-8309, E-mail:drumman88@korea.kr) ※ 팩스 또는 우편발송 시 반드시 사전 유선연락(☎033-550-8327) 바랍니다.
기 록 유 지	<input type="checkbox"/> 정기점검서류(일반점검표): 3년간 보존 * 원본은 소방서 제출, 부분은 자체 보관
관계법령 위반시 벌 칩	<input type="checkbox"/> 제출태만: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input type="checkbox"/> 미점검 또는 허위점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양벌)

※ 해당 정기점검표(일반점검표)는 태백소방서 홈페이지(<https://fire.gwd.go.kr/tb119>) ☞ 상단 메뉴 민원서비스 - 민원안내 ☞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내 정기점검 제출처는 태백소방서 대응총괄과(태백로 1120, 2층 민원실 ☎033-550-8327)이며, 기타 위험물 제조소등의 정기점검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 백 소 방 서 장